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81호서식] <개정 2018. 5. 15.>

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명 칭		대표자		운영경력 (대표자)	개월 ()
소 재 지				전화번호	
시설확보	[]소유 []임차 / []독립 []복합			개관일자	()
운영과목	[]한국어 []한국사회 이해 []기타()				

시설내역	전체 연면적	강의실	휴게실
	㎡	㎡ 개	㎡ 개
		㎡ 개	㎡ 개
		㎡ 개	㎡ 개

인력현황		과목명	성 명	자 격	과목명	성 명	자 격
	강사						
		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					
	행정 인력 등	성 명	자 격		성 명	자 격	
		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					
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